

성매매특별법이 에이즈를 확산시킨다?

홍_유은주 · 본회 교육연구과장

9.23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와 이해 당사자를 둘러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성병 정기검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성병과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현실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에이즈·성병 정기검진'의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 에이즈 예방 운동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사업의 새 모델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매 여성위를 의미했다. 이 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성매매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데 일조해왔다. 성매매 여성들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성구매자와 그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필자가 어느 공무원의 강의를 들은 논리) 이 제도는 성을 사는 사람들이 성을 파는 여성들에게 성병을 옮겨주는 것에는

무관심하면서, 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상태에서 다른 성 구매자들에게 질병을 전파시키는 점에만 개입해왔다. 그 결과 성매매 여성들은 반복적인 성병 감염과 치료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반면 검진의 의무가 없는 성구매자들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그 질병을 옮겨줄 가능성이 열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 법률 - 과거의 [윤락행위방지법]이나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 등 특별법]-은 강력한 성매매 금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즉 성매매(성을 사고파는 것 모두)를 하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염병예방법(8조)은 다방의 여자 종업원, 유흥고객원(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사술소의 여자 종업원, 특수업태부들을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정해 놓았다. 암묵적으로 이 대상자들은 성매

성매매 여성의 검진으로 에이즈단속은 허황된 바람

이 제도의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필자가 만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여성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정부의 인터뷰 좀 그만 내보내라고, 성구매자들이 정기 검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콘돔 사용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콘돔 사용을 끝까지

성매매 여성 전부를 검진할 수 없는 것, 또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근본적인 예방책인 콘돔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의무 검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과 콘돔사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시점이다.

요구하면 성 구매자들이 오히려 '네가 병에 걸린 것 아니냐'며 도리어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성매매 시 매번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가 50%를 밑돌고 있는 점은 단적으로 이런 현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으로 여성들에 대한 검진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는지도 이 제도가 시닌 효과를 측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가 실시해 온 여성들에 대한 성병/에이즈 검진은 집결지(특수업태부)와 합법 영업소(유흥접객업소, 안마시술소·소위 2차)의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신종 성매매 속의 여성들은 정부의 검진망 밖에 존재했다. 게다가 정부 집계로 33만, NGO 추정으로 120만 명이 속히 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매매 여성들 대다수는 불법적인 성매매의 알선, 착취 고리의 특수성 탓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도 않아왔다. 국가가 개인하여 성매매에 관여된 여성들에게 정기 성병·에이즈 검진을 실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예산상으로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바람 일 뿐이다. 게다가 성매매의 존속이나 방치를 기반으로 그 속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기 검진을 통해 질병 전파를 막겠다는 논리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성매매 여성은 에이즈매개체가 아닌 감염취약자

'모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기 검진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황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에이즈·성병 검진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실시되고 있으며, 한 번의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검사 직후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매매를 통해 성구매자로부터 감염되었다면, 검사가 진행되어 결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성매매 여성 전부를 검진할 수 없는 것, 또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근본적인 예방책인 콘돔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의무 검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과 콘돔사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시점이다.

에이즈 예방운동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것과 성매매 여성이 아닌 사람들(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에이즈 감염률 증가의 책임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은 에이즈 전파를 매개하는 문제 집단이 아니라, 감염에 취약한 피해자로 보호되고 지원 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의 감염을 막기 위한 새로운 에이즈 예방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